

2024

제 1 회
국립고궁박물관
대학(원)생
우수 논문 공모전
수상 논문집

국립고궁박물관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일러두기

- 1 이 논문은 '제1회 국립고궁박물관 대학(원)생 우수 논문 공모'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이다. 필자의 소속 정보는 응모 당시의 기준이다.
- 2 본문 가운데 책 제목은 「」로, 글 제목은 「」로, 그림 및 작품 제목은 <>로, 인용한 구절은 “ ”로 표시하였다.
- 3 각주에서 이미 인용된 책과 논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으로 표기하였다.
- 4 본문 내 사용된 사진, 도면, 지도 등은 모두 '도'로, 도표는 '표'로 표기하였다.

※ 이 논문집에 실린 글과 사진은 국립고궁박물관 및 각 소장처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선 왕실 왜반^{倭盤} 연구

- 19세기 연향의궤를 중심으로

이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I. 머리말

II. 왜반의 정의와 현존유물

1. 왜반의 개념과 의궤도설
2. 현존하는 왜반 유물

III. 연향의궤로 본 왜반의 쓰임

1. 정반으로서의 왜반
2. 식상으로서의 왜반

IV.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속 반과 왜반의 연관성

V. 맺음말

조선 왕실 왜반^{倭盤} 연구

- 19세기 연향의례를 중심으로

이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1. 머리말

‘왜반^{倭盤}’은 조선 후기 연향의례와 가례도감의례에 등장하는 왕실반^{王室盤}의 일종으로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 왜반에 대한 선행연구로, 조시내는 도설에 기반하여 현존유물과 연결 지었는데, 이를 통해 일반 반보다 작은 크기에 세 개의 다리를 가졌다는 형태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왜^倭’라는 명칭으로 일본에서 전래된 반으로 추정하였다.¹ 김미라는 음식차림용 가구를 분류한 연구에서 ‘상 위에 올리는 작은 반’, ‘좌식 높이의 식반’, ‘음식을 나르는 운반용 반’의 용도를 제시하여 왕실반의 구체적인 용례를 제시했다.² 그 중에서도 왜반은 위계가 낮은 신하들의 음식상이거나, 상 위에 올리는 반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연향의례를 토대로 왜반을 사용한 신분을 분석하였는데, 신분에 따른 반의 차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보다 분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³

선행연구는 주로 왜반의 형태와 용례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왜’라는 접두사가 일본과 관련되어 수입기물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일본풍의 국내생산품을 가리키는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왜반의 쓰임과 신분별 차등에 있어서 시론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왜반의 사용양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풍부한 용례의 수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향의례를 중심으로 한 왕실문헌을 토대로 왜반의 쓰임 사례와 제작수량을 종합 검토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1 조시내,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 66~67.

2 김미라, 「18-19세기 의례에서 보이는 음식차림용 목제 '반상(盤床)'의 쓰임과 형태」, 『한국문화연구』 42(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2), pp. 196~198.

3 김미라, 위의 논문(2022), pp. 182~194.

II. 왜반의 정의와 현존유물

1. 왜반의 개념과 의궤도설

왜반은 연향의궤와 가례도감의궤에 등장하는 왕실반의 일종이다. 연향의궤에는 왜반에 대한 도설이 실려 있어 물명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⁴⁾ 왜반은 『(무자)진작의궤』(1828)에 도설로 처음 등장한다. <고족왜반高足倭盤>이라고 하여 높은 다리가 붙어있음을 지칭했고, 『(무신)진찬의궤』(1848)의 도설에도 다리가 달려 있지만 ‘고족’이 빠져 있다. 무신년 이후의 연향의궤에도 왜반의 도설이 계속해서 실리는데, 형태나 명칭의 변화가 없고 같은 도설이 반복적으로 수록되었다. 한편 『(기축)진찬의궤』(1829)의 <사우왜소반四隅倭小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이다. ‘사우四隅’라는 명칭처럼 상판은 귀 접은 사각형에 전이 높게 올라와 있고, 판형 다리가 두 개 있으며 사각의 투공이 있다. 더불어 상판에 도라지로 보이는 초화문이 그려져 있는데 반의 재질적 특성상 옷칠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일본의 칠기에서 보이는 문양이다. <사우왜소반>은 『(기축)진찬의궤』에만 수록되고 이후의 연향의궤에는 실리지 않았다. <고족왜반>과 <왜반>은 다리가 짧고 낮아 접시나 쟁반에 가까워 보이는 반면, <사우왜소반>은 다리가 길게 뻗어 있어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식상食床으로 추정된다.

<p>盤倭足高</p> 	<p>盤倭</p> 	<p>盤小倭隅四</p> 
<p>『(무자)진작의궤』(1828) 고족왜반高足倭盤</p>	<p>『(무신)진찬의궤』(1848) 왜반倭盤</p>	<p>『(기축)진찬의궤』(1829) 사우왜소반四隅倭小盤</p>

표 1. 의궤도설에 나타난 왜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섬용지瞻用志』에 따르면, “왜반은 일본에서 온 것으로, 몸체가 둥글고 다리가 없으며 작다. 옷칠을 하고 금니金泥로 풀이나 휘류의 꽃과 잎 모양을 그렸다. 여기에 차와 술, 과정菓釘 종류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⁴⁾ 왜반의 형태를 묘사함에 ‘다리가 없고 작다.’라고 하였

4 『林園經濟志 瞻用志』倭槃“來自日本，體圓無足而小，髹漆而金畫草卉花葉之形，可托茶酒，果釘之類。”

으나 도설에서의 왜반은 모두 다리가 존재한다.⁵ 또 ‘몸체가 둥글다.’는 것은 <고족왜반>과 <왜반>에만 해당되며, ‘금니로 풀이나 휘류의 꽃과 잎 모양을 그렸다.’는 것은 <사우왜소반>에만 해당된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원형의 상판에 삼족의 다리를 한 반만을 왜반으로 보았으나,⁶ <사우왜소반>과 같이 다른 형태의 반도 왜반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할 필요가 있다.

2. 현존하는 왜반 유물

왜반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호림박물관 등에 15건 가량 확인된다.^{〈표 2〉} 원형의 판목을 안쪽으로 파내어 전을 마련하였으며 원형의 음각선을 1조 두고, 작은 다리 3개 혹은 4개를 끼워 넣은 모양새로, 의궤도설 중 <고족왜반>과 <왜반>에 속한다. 다만 도설에서 반면盤面의 형태는 얇다란 전이 직립하여 전을 따로 만들어 부착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존유물은 통판을 깎아내어 마련하여 형태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물에서 보이는 오목한 접시형의 반면은 왕실반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뒷면에는 직사각형의 홈을 파고 다리를 끼워 넣었다. 다리는 보통 삼족이나, <사각원반四脚圓盤>이라는 유리건판 사진⁷도 전하고 있어 사족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름의 크기를 살펴보면 15~18cm, 24~26cm, 34~35cm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상정할 수 있다.

		
<p><주칠칠朱黑漆「신사년」명銘 원반圓盤> '신사 큰전고간다동소십오독' 1881년 추정, 지름 18.6cm, 높이 7.4cm, 국립중앙박물관</p>	<p><주칠쟁반朱漆錚盤> '계유윤현고간 동소이독' 1873년, 지름 26cm, 높이 6.8cm, 서울역사박물관</p>	<p><주칠원형소반朱漆圓形小盤> '갑오주경년고간 이뉴대동소이독오' 1894년 추정, 지름 34.8cm, 높이 8.5cm, 국립고궁박물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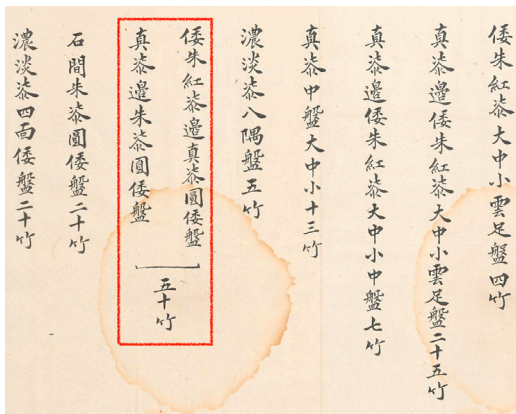
표 2. 현존하는 왜반 유물

5 이에 대해 원문 ‘體圓無足而小’가 ‘몸체가 둥글고 다리가 없으며 작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몸체가 둥글고 다리가 없거나 작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현재 왜반으로 여겨지는 유물들은 모두 왜소한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조시내, 앞의 논문(2007), pp. 66~67.

7 국립중앙박물관, <사각원반(四脚圓盤)>(건판024242)

지름 10cm대의 소형에 속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주흑칠朱黑漆 한글 「신사년」명銘 원반圓盤>은 유사한 유물이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스큰전고간대등소십오독’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명문의 글자체나 음각표현이 유사하며, 크기는 15.6cm(국립고궁박물관), 16.6cm(고려대학교 박물관), 18.6cm(국립중앙박물관)로 비슷한 편이다. 명문의 ‘신사’는 1881년(고종 18)이고, 소용처는 ‘큰전고간’, 즉 대전大展의 곳간庫間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대중소 15죽’으로 보아 150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소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양식과 명문, 크기가 유사한 유물이 여러 점 전하는 것으로 보아 신사년에 사용했던 유물이 흩어져 전세된 것으로 추정된다.⁸ 1882년(고종 19) 2월에는 왕세자 이척李拓(순종純宗, 1874-1926)의 가례가 있었는데, 전 해인 1881년에 다량의 가례용품이나 생활기명을 마련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신사사월 천만세 동궁마마가례시 내사기명건기辛巳四月 千萬歲 東宮媽媽嘉禮時內司器皿件記>의 곳간 조條에는 ‘왜주홍칠변진칠원왜반倭朱紅漆邊眞漆圓倭盤’, ‘진칠변주칠원왜반眞漆邊朱漆圓倭盤’을 합쳐 50죽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중 하나의 기명일 가능성이 높다.<도 1> 유물의 반면에는 음각원문을 1조 둘러 안쪽은 주칠하고 가장자리는 흑칠하였는데 이를 ‘변진칠邊眞漆’이라고 지칭한 것과도 상통한다.



도 1. 「신사사월 천만세 동궁마마가례시 내사기명건기辛巳四月 千萬歲 東宮媽媽嘉禮時內司器皿件記」 ‘곳간庫間’ (강조표시는 필자), 188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유물번호 : RD01714



도 2. <주칠삼죽원반>, 1874년 추정, 지름 24.6cm, 국립중앙박물관

지름 20cm대의 중형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칠삼죽원반>은 다리가 결실되었으나 다리를 끼웠던 홈을 통해 삼죽이었음을 알 수 있다.<도 2> 또 이 유물은 현존하는 왜반 중 유일하게 한문으로 명문이 기입된 사례이다. 칠의 박락이 심해 명문의 전문을 관독할 수는 없지만, ‘갑술신조甲戌新造’, ‘십죽十竹’, ‘별고別庫’를 식별 가능하다.

8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4점의 왜반이 전하는데 ‘신사 큰전고간 대등소십오’의 명문이 있는 것은 1점뿐이고, 3점은 명문이 없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목공예명품도록』(1990), pp. 108~109. 제작 시 150립의 모든 반에 명문을 새기기보다는 구분이 필요한 반에만 새겼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갑술은 1811년(순조 11) 혹은 1871년(고종 8)이며, 100개 중 하나로 보이고, 별도로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주칠쟁반>은 운현궁 기증유물로, '계유'는 1873년(고종 10)이며 20개 중 하나이다.

지름 30cm 이상 대형의 경우 국립고궁박물관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주칠원형소반>은 반면이 34.8cm에 달하며, 전체적으로 나뭇결이 비쳐 보이고 있다. 상판에 접목 흔적이 보이지 않아 통판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판을 파내어 변죽을 마련하였는데 약간 높게 올라와 있다. 큰 크기에 맞게 다리는 사족으로 마련되었다. 명문 '갑오조경년 고간 이뉴대동쇼이독오'에서 갑오는 1894년(고종 31)이며, 자경전은 경복궁 자경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⁹ 대·중·소 25개 중 하나였을 것이다.

유물의 명문을 분석한 바, 대·중·소로 나뉘는 크기정보, 수십~수백 개의 반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된 정황, 19세기 후반의 추정연대를 간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임원경제지』의 '일본에서 왔다.'는 기록과 다르게, 수백 개에 달하는 수량과 '신조新造'라는 명문은 왜반이 조선에서 생산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반의 양식도 수입품이라기보다 조선 왕실반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왜반'이라는 명칭은 어째서, 언제부터 붙은 것일까? 왜반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기에 많은 수량이 필요했던 것일까?

III. 연향의례로 본 왜반의 쓰임

1. 쟁반으로서의 왜반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 왜반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95년(정조 19)의 『원행을묘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이다. 왕이 창덕궁 춘당대春塘臺에서 관원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는 호궤稿饋 대목과 왕의 어머니가 실무로 수고한 관리들에게 내리는 상전饋典에서 왜반이 등장해 구체적인 용례를 알 수 있다. 상전과 호궤는 임금 등 윗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내려주는 것으로, 음식과 술을 전송餽送하는 성격이 있다.

왕이 친히 춘당대에서 베푸는 호궤稿饋

정리당상과 낭청은 각각 왜반기이倭盤只伊 1상. 서리와 서사는 소쟁반기이小淨盤只伊 하나. 교

⁹ 자경전(慈慶殿)은 왕실의 여성 웃어른을 위한 건물로, 19세기에는 창경궁과 경복궁 자경전이 존재했다. 창경궁 자경전은 1777년(정조 1)에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를 위해 지은 건물이다. 정조와 화빈윤씨의 가례나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갖가지 연향이 열렸으나, 1865년(고종 2) 경복궁 중건 당시 헐어 궁궐 증축에 사용되었다. 경복궁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사업에 따라 1867년(고종 4)에 지어졌으며, 대비 신정왕후 조씨(神貞王后 趙氏, 1808~1890)가 머무는 침전이었다. 또한 경복궁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화재로 1873년과 1888년(고종 25)에 재건한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창경궁 자경전의 존속시기는 1777~1865년, 경복궁 자경전은 1867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런관, 별무사, 퇴사, 순령, 수고직, 사령, 문서직, 사환군은 각각 흰떡3개, 대구어1편, 황육적 1곳.¹⁰

왕의 어머니께서 각참各站에 내리는 상전饋典

정리당상 6명은 선찬 각각 대반 하나[一大盤]. 낭청 5명은 각각 중반 하나[一中盤]. 감관 2명은 각 왜반기이 하나[倭盤只伊一][이상은 반마다 각각 술병을 갖춘다]"

반기[盤只]란 목판이나 쟁반 등에 나누어줄 음식을 뭉뚱이 담아놓은 것을 이르며, 음식을 담은 목기는 주로 왜반이나 늦쟁반, 사각우판 등이 사용되었다.¹² 왕이 내리는 호궐에서 정리당상과 낭청이 왜반기이 1상을 받았던 한편, 왕의 어머니인 혜경궁이 내리는 상전에서 정리당상은 대반을 받고, 보다 하급 관리인 감관이 왜반기이를 받아 치사에 단계를 두었다. 이를 통해 왜반기이는 대반보다는 낮고, 소쟁반보다는 높은 위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795년 6월 혜경궁의 탄신일을 기념하여 베푼 연희당진찬에서도, 유생들에게 내려주는 사찬 상賜饋束으로 흑칠중원반 2죽과 왜반 5립¹³이 사용되었다.¹³ 이 때 도자기는 사용하지 않고 왜반에 바로 음식을 담았다. 즉, 관리 혹은 유생에게 여러 가지 잔치음식을 담아 사여하는 음식상을 왜반기[倭盤只]라고 하고, 왜반기 한 상에 사용하는 기물이 왜반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급 관리 혹은 실무자에게 사여하는 음식상으로 반기를 쓴 사례는 19세기 연향의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표 3〉¹⁴}

『(무신)진찬의궤』(1848)에서는 내빈, 즉 내명부를 위한 음식으로 왜반기 64상이 준비되었는데, 흑칠왜반에 15가지 음식이 그릇 없이 담기었다. 이에 음식에 꽂는 꽃인 반화[盤花]를 2개 꽂아 풍성함을 더했다.¹⁵ 「기용」조에는 흑칠왜반 60립은 ‘내하[內下]’한다고 하였는데, ‘내하’란 궁 안에서 기물을 내려준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왜반기상에 흑칠왜반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음식의 구성, 향유 신분, 그리고 반의 조달방식을 파악 가능하다.

10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五, 「賞典」 親臨春塘臺稿饋

11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五, 「賞典」 慈宮頒下各站賞典

12 ‘盤只伊’란 ‘반기이’의 차자 표기로, ‘伊’는 ‘이’ 또는 말모음 ‘ㅣ’의 음가자 표기이다. 오창명, 「물명의 차자 표기 연구(1)-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영주어문학회, 2001), pp. 62-63. 정조대의 문헌에서는 ‘盤只伊’로 표기되지만, 19세기 왕실문헌에서는 ‘伊’가 사라지고 ‘盤只’로만 표기된다.

13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七, 「器用」 儒生牀熟設所: 黑漆中國盤二竹, 倭盤五立, 砂鉢十竹, 砂大樸匙五立, 磁椀一立…”

14 연향의궤에서 음식상과 이에 사용된 가구·기명을 살펴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궤의 「찬품(饌品)」에는 특정 신분의 사람에게 지급할 음식상의 가짓수와 규모, 각 음식 재료에 들어갈 음식재료의 분량이 나타나 있다. 이는 대규모로 필요한 연향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상차림에 대한 계획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신분별 음식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용(器用)」에는 행사에 사용된 물품과 주관 관청이 목록화되어 있다. 이는 이미 사용한 기물을 사후 정리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기용」을 통해 기물의 수급방식을 알 수 있고, 「찬품」의 기록과 대조하여 특정 신분의 음식상에 어떠한 가구와 기명을 사용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향의궤 내 반차도 혹은 궁중행사도를 참고하는 방법인데, 주로 주빈(主賓)의 음식상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왜반의 경우 반차도나 행사도에는 그려지지 않아, 「찬품」과 「기용」을 살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였다.

15 음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색병(各色餅), 약과(藥果), 다식과(茶食果), 만두과(饅頭果), 각색다식(各色茶食), 매화연사과(梅花軟絲果), 매화강정(梅花強精), 세건반연사과(細乾飯軟絲果), 요화 오색강정(蓼花五色強精), 삼색빙사과(三色冰絲果), 각색당(各色糖), 삼색실과(三色實果).

	찬품(饌品)			기용(器用)		
	반	신분	음식	반	수량	조달방식
『(무자)진찬의궤』 (1828)	왜흑칠원반	여관	10가지 음식	(기록없음)		
『(무신)진찬의궤』 (1848)	흑칠왜반	내관, 내빈, 여관	15가지 음식	흑칠왜반	60립	내하
				주칠왜반	10립	내하
『(무진)진찬의궤』 (1868)	흑칠원반에 흑칠왜반 첨배(添排)	내빈, 외빈, 제신	원반 - 7그릇(唐書器) 왜반 - 16가지 음식	홍왜반	26립	내하
				흑칠왜반	300립	내하
『(계유)진찬의궤』 (1873)	흑칠원반에 주칠왜반 첨배(添排)	진작소 당량	원반 - 7그릇(倭燗磁器) 왜반 - 19가지 음식	왜반	500립	사서 씌 (각1냥 4전)
『(정축)진찬의궤』 (1877)	흑칠왜반, 왜반	장관, 장교, 원역, 여관	15가지 음식	왜반	50립	내하품을 수리함
『(정해)진찬의궤』 (1887)	주칠왜반	여령, 여관, 장교, 악공	11가지 음식	원왜반	70립	내하품을 수리함
				왜반	400립	새로 준비함 (총 830냥)
『(임진)진찬의궤』 (1892)	주칠왜반	내시, 입직장관, 장교	12가지 음식	왜반	300립	사서 씌 (총 1200냥)

표 3. 19세기 연향의례 중 내외빈 이하 왜반 사용

『(무진)진찬의궤』(1868)에서도 왜반기가 등장하는데 원반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왜반이 쓰여 흥미롭다.¹⁶

12월 11일 설행된 대전회작大殿會酌은 왕이 주최하여 연향을 준비한 관원들을 치사하고 소규모로 회포를 푸는 자리였다. 이 때 내빈과 외빈을 위해 93상의 음식상이 준비되었다.

내외빈상(왜반기 1좌를 첨배添排) 93상

매 상 7그릇, 당화기唐書器, 흑칠원반黑漆圓盤 및 흑칠왜반黑漆矮盤은 내하內下.

○내빈10상, 외빈32상, 내입51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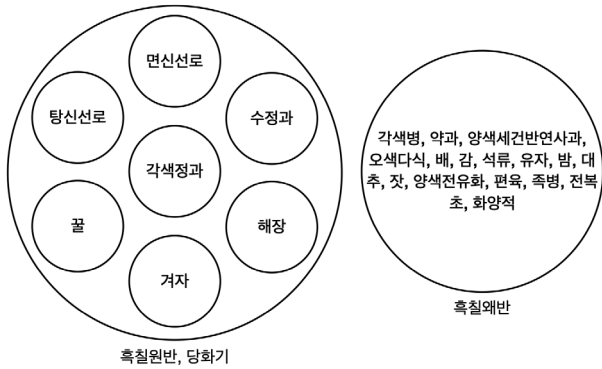
탕신설로 1그릇, 면신설로 1그릇, 각색정과 1그릇, 수정과 1그릇, 꿀 1그릇, 겨자 1그릇, 해장 1그릇,

왜반기 1좌坐(각색병, 약과, 양색세건반연사과, 오색다식, 배, 감, 석류, 유자, 밤, 대추, 잣, 양색전유화, 편육, 죽병, 전복초, 화양적)

상화 2개.¹⁷

16 원반(圓盤)은 연향의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좌식 음식상으로, 상판이 원형인 반의 총칭이자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았을 때 무릎끼까지 오는 나지막한 반을 이른다. 궁중행사도 중 연향풍경을 그린 장면을 살펴보면, 신하들이 좌우로 도열해 앉은 가운데 앞에 무문의 원통형 반을 두고 잔치음식을 받은 모습이 그려져 있다. 원반은 주로 이러한 반을 지칭하였다.

17 『(戊辰)進饌儀軌』(1868) 「饌品」 內外賓床.



도 3. 『(무진)진찬의궤』(1868) 대전회작 시 내외빈의 음식상 도식



도 4. 《기사경회첩》〈본소사연도〉(부분),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내외빈을 위한 93상의 음식상은 당화기, 흑칠원반, 흑칠왜반으로 이루어졌다. 또 ‘왜반기 1좌를 더해 배설한다[倭盤只一坐添排.]’라는 대목을 통해 흑칠원반이 주 음식상, 왜반이 보조 음식상임을 보여준다. 흑칠원반에는 7가지 음식을 올렸는데 각각 ‘그릇[-罏]’이라고 하여 도자기인 당화기에 음식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흑칠왜반에는 각색병을 포함한 16가지 음식이 그릇 없이 담겼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¹⁸ <도 3> 도자기에 음식을 담아 원반에 배설한 것은 《기사경회첩첩社慶會帖》〈본소사연도本所賜宴圖〉속 기로신耆老臣의 음식상을 참고할 수 있다.¹⁹ 낮고 넓은 흑칠원반에 차려진 잔치음식 중에서도 유기접시에 음식을 높게 고여 올리고 위에 꽃을 꽂아 장식한 것이 눈에 띄는데, 왜반도 이러한 쓰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반을 원반 위에 올려서 배설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가장 화려하고 주요한 음식을 담은 쟁반이나 접시처럼 기능했던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원반과 왜반을 합쳐 배설하는 것은 이후 『(계유)진작의궤』(1873)에서도 이어진다.

왜반은 내외빈의 보조음식상 혹은 입직관원, 정리당상 등 실무를 보는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반사(頒賜)상에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수량이 필요했다. 필요한 왜반의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내하로 조달하던 왜반은 점차 진찬소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계유년 진작에서는 무려 왜반 500립을 마련하였는데, 1립 당 1냥 4전을 주고 궁 밖에서 사온 정황이 보이고,²⁰ 이후 『(정해)진찬의궤』(1887), 『(임진)진찬의궤』(1892)에서는 왜반을 구입하는 데 각각 830냥, 1200냥이 들었다.

18 <도 3>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왜반기는 내외빈상의 구성품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 여관, 내관 및 입직장관, 각방차비 등 행사의 진행을 돕는 실무관원들에게 내려진 반사상(頒賜床)이기도 했다. 이 ‘흑칠왜반 위 16가지의 음식’은 하나의 음식상 단위가 되어 수백 상이 마련되었다. 같은 의궤의 「기용」조에 홍왜반과 흑칠왜반을 합쳐 326립을 사용했다고 한 것에서도 반사상으로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9 왜반이 쟁반의 속성을 가졌음은 왕실 가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명온공주방가례등록(明溫公主房嘉禮錄)』(1827)에 따르면 출할 시 살림집에 지급되는 기명 중 흑칠접시(黑漆貼匙) 삼죽(三竹)을 왜반으로 대신해서 쓴다는 내용이 있다. 이후 왕녀의 가례 관련 문헌에 접시를 왜반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실린다.

20 『(癸酉)進爵儀軌』卷 3, 「器用」, “○買用器用 倭盤五百立 價錢七百兩 每立一兩四錢.”

이와 같은 연향의례에 기록된 왜반의 수급양상은 현존하는 유물 뒷면의 명문과 대조해 보면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정해)진찬의궤』(1887) 「기용」 조에 “본소신비本所新備”라고 하여 진찬소의 주관으로 새로 마련해야 할 기물과 그 비용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원왜반圓倭盤과 왜반이 등장한다. 또 ‘반기盤器는 쓴 후 내별고內別庫에 봉수逢授한다.’라고 하여 사용 후의 보관까지 이르고 있다.²¹ II장에서 살펴본 유일한 한문 명문 왜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추칠삼죽원반>^(도 2)의 ‘신조’, ‘별고’와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2. 식상으로서의 왜반

한편, 연향의례에서 왜반이 왕과 왕비의 음식상에 쓰인 정황도 확인된다. 바로 효명세자가 주관한 3번의 연향 중 『(무자)진작의궤』(1828)의 진작이다.^(표 4)

	찬품(饌品)			기용(器用)		
	반	신분	음식	반	수량	조달방식
『(무자)진작의궤』 (1828)	홍칠고죽왜반	왕, 왕비	17그릇(唐書器)			(기록없음)
	홍칠고죽왜반	왕, 왕비	14그릇(唐書器)			

표 4. 조선 19세기 연향의례 중 왕과 왕비 왜반 사용

1828년(순조 28) 6월 창덕궁 연경당에서 설행된 진작에서는 왕과 왕비를 위한 음식상으로 ‘소반과小盤果’가 올려졌다. 소반과는 왕과 왕비가 연향이 진행됨에 따라 무용 정재를 감상하며 드는 음식상으로, 앞서 살펴본 사찬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소반과 상으로는 홍칠고죽왜반을 사용하였고, 음식은 당화기에 담아 17가지를 올렸다. 17그릇의 음식은 대부분이 건조한 과자류로, 최대 1척까지 높게 고였다.²² 상당한 무게를 가졌을 터인 음식과 도자기를 올릴 만한 반은 앞 절에서 살펴본 쟁반으로서의 왜반과는 다른 형태였을 것이며, 원반을 보조하는 접시나 쟁반의 성격보다는, 그 자체로 바닥에 두는 식상의 속성을 가졌을 것이다.

홍칠고죽왜반은 「기용」조의 기물목록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하품이라는 것 이외에는 기물의 조달에 대해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나, 일본에서 들여온 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듬해인 1829년(순조 29), 효명세자가 기획한 마지막 연향인 기축진찬이 열렸다. 『(기축)진찬의궤』(1829)의 「찬품」이나 「기용」조에 왜반이 기록된 바는 없지만, 의궤에 도식으로 <사우왜소반>이 실려 있다.^(표 1) 앞

21 『(丁亥)進饌儀軌』卷 3, 「器用」 “本所新備：…高足大圓盤三坐圓倭盤七十立 內下修補所入椶板倭朱紅常朱紅全漆每漆等以上折錢及匠料並錢五百九十六兩. 倭盤四百立 新備價錢八百三十兩. …○以上盤器用後逢授內別庫.”

22 17가지의 음식은 다음과 같다. 각색병(各色餅, 고임높이 1尺), 다식만두과(茶食果饅頭果, 고임높이 1尺), 수면(水麪), 삼색다식(三色茶食, 고임높이 1尺), 삼색매화강정(三色梅花強精, 고임높이 1尺), 조란울란강란(棗卵栗卵薑卵, 고임높이 7寸), 생리생울단행(生梨生栗丹杏, 고임높이 9寸), 각색정과 및 양색녹말병(各色正果及兩色菘末餅, 고임높이 7寸), 수정과(水正果), 잡탕(雜湯), 각색절육(各色截肉, 고임높이 1尺), 편육(片肉, 고임높이 7寸), 해삼전 및 양색전유화(海蔘煎及兩色煎油花, 7寸), 전복초 및 각색화양적(全鮑炒及各色花陽炙, 7寸), 꿀(淸), 겨자(芥子), 해장(醋醬) ○상화 10개(床花 十箇). 『(무자)진작의궤』(奎14364) 「饌品」의 演慶堂進爵 참고.

장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제작되었던 반으로 보인다. 1828년 무자년의 진작에서도 일본의 반이 왕과 왕비의 식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시대 대일외교와 관련된 문서를 모은 『별차왜등록(別差倭騰錄)』의 서계별폭등본(書契別幅騰本)에는 ‘채화유질반반(彩畵有跌飯盤)’, ‘채화적칠유질반반(彩畵赤漆有跌飯盤)’ 등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에 주는 선물로 다리가 붙고 채색 문양이 있는 반을 보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³ 즉, 대일외교문서에 주기적으로 일본에서 반을 선물로 보내온 사례가 존재했고, 연향의례에는 일본풍의 왜반 도설이 실려 있었다. 이것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반이 왕실가족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연향의례에 나타나는 왜반을 정리하자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례』에서 실무에 수고한 신하에게 호쾌하거나 상을 내려주는 음식상으로써 ‘왜반기’가 등장하였고, 1828년 『(무자)진작의례』에는 ‘고족왜반’으로 도설로써 처음 수록되었으며, 1848년(헌종 14) 이후에는 수십·수백 립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왜반은 18세기 말부터 왕실행사에 쓰이기 시작해 19세기에는 활발히 사용·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쓰임과 관련해서는 쟁반으로서의 왜반, 식상으로써의 왜반 두 유형이 존재했다. 쟁반으로써의 왜반은 원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수백 립이 제작 사용되었다. 반면 식상으로써의 왜반은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식가구로, 왕과 왕비만 사용하였으며 국내 제작된 정황이 없다. 일본 칠가구가 도식으로 실린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들여온 반으로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떠한 식가구를 사용했을까? 일본의 반과 조선의 왜반이 형태적으로나 용도상에서 유사점이 있었을까?

IV.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속 반과 왜반의 연관성

일본의 식반에 대해서는 데라시마 료안(寺島良安, 1654-?)의 『화한삼재도회』(1713)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²⁴ 31권 포주구(庖廚具)와 32권 가식구(家飾具)에는 반, 분盆, 식궤(食機), 순(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다.²⁵ <표 5> 부엌에서 쓰거나 식음에 사용하는 기명류에 대해 설한 31권 포주구에는 쟁반식의 반과 분이, 실내의 장식이나 가구에 대해 설한 32권 가식구에는 식상의 일종인 식궤와 순이 실려 있

23 『別差倭騰錄』(奎12871) 券6~8. 1762년, 1719년, 1787년의 별폭 참고.

24 1713년 일본에서 간행된 화한삼재도회는 명의 『삼재도회(三才圖會)』(1607)를 모방하여 편찬된 종합백과사전이다. 단순히 삼재도회를 개작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에도시대 중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고인덕,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로 - 그림(圖)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96(중국어문학연구회, 2016), pp. 427~429; 반상류에 관련해서도, 『삼재도회』에는 명의 생활상과 맞는 입식 위주의 상탁류가 주로 실렸고 좌식의 식반이나 쟁반류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화한삼재도회』에는 당시 일본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기물이 실려 있다. 이는 일본 중심적인 서술이며, 실생활의 반영이다.

25 <표 5>의 『화한삼재도회』 원문과 그림은 日本古典籍データベース(国文研等所蔵, <http://codh.rois.ac.jp>)에서 열람하였다. 번역은 寺島良安 譯註, 『和漢三才圖會5』(平凡社, 1985)를 참고하였다.

다. 반과 분은 원형의 반면에 왜소한 다리가 달려 있어 현존하는 쟁반형 왜반과 형태적으로 유사한데, 특히 분의 경우, 현대에는 구연이 작은 반과 같은 권물^{權物}까지 분이라고 칭하며, 음식을 늘어놓는 데^{配膳} 사용하거나 식상에 대응해서 쓴다고 하였다. 권32의 가식구의 식궤는 행상이나 식상의 일종이며, ‘오시키^{おしき}’라고 읽고, 다리의 모양이 다양하며 흑칠 혹은 주칠로 마무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왜명초^{倭名抄}』에서 “순은 원안^{圓案}이다.”라고 한 바를 인용하였지만, 당대에는 둥근 안이 사용되지 않고 모두 방형에 크기와 다리 모양 등이 다양하다고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른 시기에는 원형의 상판을 가진 식상을 사용했으나 점차 방형으로 모양이 바뀌어, 18세기 초에는 이미 원형은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순은 빙례나 봉헌 때 사용하던 격식 있는 식상이라고 하였는데, 조선과 사용방식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림 좌측 상단의 비^櫃는 목판으로, 순의 대응으로 삼거나 떡 등을 담는다고 하였다. 이 또한 왜반에 건조한 과자나 떡을 비롯한 고임음식을 담았던 조선의 정황과 유사하다.

권 31 포주구 庖廚具	반 ^盤 (さら)		반은 물건을 담는 그릇이다. ... 평반(平盤)과 호명(壺皿)은 근세 풍습으로 목반(木盤)의 일종이다. 아울러 뚜껑이 있다. 첩자(疊子)는 지금 풍속에 따르면 목반(木盤)이라고 한다. 일명 ‘요고(腰高)’라고 하는 것이 이에 맞을 것이다.
	분 ^盆 (ぼん)		분은 일반적으로 스리바치(掃鉢, すりばち), 과자분(菓子盆) 등의 종류가 있으며, 위는 넓고 밑이 오므라져 깊은 도기(陶器)이다. 그런데 현대에는, 구연이 약 1치밖에 안되는 반과 같은 왜게모노(捲物, わげもの)까지 모두 분이라고 칭하며, 배선(配膳)에 사용하거나 오시키(食机, おしき)이 대응하거나 한다. 또한 깊은 것은 모두 발(鉢)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처럼 고금(古今)에 명의(名義)가 상반하는 것이 종종 존재한다.
권32 가식구 家飾具	식궤 ^{食机} (おしき, 食案, 行床)		『왜명초(倭名抄)』에, “행상(行床)은 식상(食床)의 일종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최근 일반적으로 일명 절부(折敷)란 오시키(御食机, おしき)라는 것이다. ...식궤의 형태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카나모리 소우와[金森宗和], 설제(雪齊), 고보리 엔슈[小堀遠江守] 등은 모두 다도에 정통한 것이며, 호사가들의 식궤의 형태도 제각각이어서, 접족(蝶足, ちょうあし), 은행족(銀杏足, いちようあし), 모족(猫足), 종화족(宗和足, そうわあし) 등 셀 수 없다. 그 칠색은 정흑(正黒)이다. 진화주(眞和朱)나 진사(辰砂)라고 하는 것, 개주(皆朱)라고 하는 것 모두 똑같이 쓴다. 벵갈라주의 것은 색이 선명하지 못하고, 왜토주를 쓴 것도 다음가는 것이다. ...
	순 ^椀 (だい)		『왜명초』에, “순이란 원안이다.”라고 하였다. 현재는 둥근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 모두 방형으로 다리가 있고, 크기가 다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빙례(聘禮) 때 금은백호(金銀帛袴)의 여러 물건을 이에 올려 증답한다. ...다리를 구름 모양으로 만든 것을 운족(雲足)이라고 이름하고, 봉헌할 때 이를 이용한다. 다리는 사각이고 박 모양 같은 구멍이 있는 것을 이중조[二重の彫]라고 한다. 위의 경우에 이를 이용한다. 둥근 투공이 하나 있는 것은 보통 일반인이 이용한다. ... 본(櫃)은 목판(木版)으로 이에 물건을 담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를 순의 대응으로 삼고, 혹은 고병(饅餅) 등을 여기에 담는다.

표 5. 『화한삼제도회』 권 31, 권 32 속 식사용 반

그릇이나 쟁반과 같은 쓰임을 보이는 31권의 반·분은 조선의 쟁반형 왜반과, 보다 격식 있는 쓰임을 보이는 32권의 식궤·순은 식상형 왜반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쟁반형 왜반이 조선에 들어와서 접시 혹은 쟁반의 쓰임을 견지하며 조선에서 대량 생산된 ‘일본풍 반’이었다면, 식상형 왜반은 동시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반’이며, 식상으로서 왕실가족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왜반의 의궤도설, 현존유물, 쓰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존하는 유물은 명문을 통해 19세기 후반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향의궤의 「찬품」과 「기용」조를 통해 음식상을 복원해본 바, 왜반에는 쟁반으로 쓰인 것과 식상으로 쓰인 것 두 종류가 파악된다.

쟁반으로 쓰인 것은 유물이 현존하는데, 주로 사찬상으로 사용되었고 한 번에 수십 혹은 수백 럽이 필요하였기에 국내에서 제작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반면 식상으로 쓰인 것은 현존 유물이 없는데, 왕과 왕비의 반과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본에서 들여온 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사용한 식반이 조선의 왜반과 연관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일본에서도 쟁반형과 식상형으로 구분되었다. 작고 과자를 담는다는 것, 삼족의 다리가 달린 도설이 실린 것은 유사하였으나, 동시대 일본의 식반과 조선의 왜반은 형태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왜반이 단순히 일본풍 반, 일본의 반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고유한 연향음식문화와 사찬문화를 반영한 기물로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물명에 외국명이 포함되는 경우 그 제작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도자기 연구분야에서 이뤄져 왔다. 일례로 ‘당사기’가 중국 도자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중국풍 백자를 포함하였을 것이라는 최근의 연구가 있다.²⁶ 왜반 또한 외국의 이름을 가졌으나 조선에서 생산된 공예품 중 하나로, 도자기 외의 목기류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반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왕실의 풍부한 기록자료를 토대로 공예품의 물명과 쓰임을 추려내고, 현존유물에 새겨진 명문과 연결지어 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향의궤를 중심으로 왜반의 용례를 수집하였는데, 가례도감의궤나 왕실 가례 관련 발기에도 왜반이 등장한다. 특히 왕실발기의 기물목록에는 ‘원왜반’, ‘왜반’ 외에도 ‘사면왜반’ 등이 있어 또다른 형태의 왜반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왕실 문헌 속 왜반과 관련하여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6 장남원, 「당사기(唐砂器)考」, 『한국문화연구』 46(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4).

[참고문헌]

[사료]

- 『園幸乙卯整理儀軌』
『明溫公主房嘉禮瞻錄』(1827)(古4255-2)
『(戊子)進爵儀軌』(1828)(奎14364)
『(己丑)進饌儀軌』(1829)(奎14370)
『(戊申)進饌儀軌』(1848)(奎14372)
『(戊辰)進饌儀軌』(1868)(奎14374)
『(癸酉)進爵儀軌』(1873)(奎14375)
『(丁亥)進饌儀軌』(1887)(奎14405)
『(壬辰)進饌儀軌』(1892)(奎14428)
『林園經濟志 贍用志』
『和漢三才圖繪』

[단행본 및 논문]

- 고려대학교 박물관, 『목공예명품도록』, 1990.
- 고인덕,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로 - 그림(圖)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96, 중국어문학연구회, 2016.
- 김미라, 「18-19세기 의궤에서 보이는 음식차림용 목제 ‘반상(盤床)’의 쓰임과 형태, 『한국문화연구』4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2.
- 서울역사박물관, 『운현궁생활유물Ⅶ』, 2003.
- 서유구 저·임원경제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권48-49) 섬용지 : 건축·도구·일용품 백과사전 1』, 풍석문화재단, 2016.
- 오창명, 「물명의 차자 표기 연구(1)-『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 영주어문학회, 2001.
- 조시내,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남원, 「당사기(唐砂器)考, 『한국문화연구』4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4.
- 寺島良安 譯註, 『和漢三才圖會5』, 平凡社, 1985.

조선 왕실 왜반^{倭盤} 연구 - 19세기 연향의궤를 중심으로

주제어

왕실반 | 왕실공예품 | 19세기 | 조선 | 식문화 | 연향음식 | 진찬의궤

왜반^{倭盤}은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된 식반^{食盤}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왜반의 형태와 용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왜^倭’라는 명칭과 일본과의 연관성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왜반의 형태와 용도,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繪}』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종합 고찰하였다. 현존하는 왜반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유물의 크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며 뒷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와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다. 왜반의 쓰임은 연향의궤에 자세한데, 1795년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圓幸乙卯整理儀軌}』에 왕이 신하에게 음식을 내릴 때 사용된 사례를 시작으로 19세기에 활발히 제작·유통되었다. 또한, 왕과 왕비의 음식상에도 왜반이 등장하며 이는 일본에서 들여온 식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에도시대의 종합 백과사전 『화한삼재도회』에 유사한 식반이 등장하여 조선 왕실의 왜반과 형태와 사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왜반의 형태와 용도로 조선 왕실의 음식 문화를 재조명하고, 왜반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사용 목적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왜반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일본풍 반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선시대 국왕 국장^{國葬}의 설빙의례^{設氷儀禮}

이정민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국장의 운영과 설빙
 1. 흥례의 정비와 「설빙」
 2. 국왕 국장에서 설빙 시행 양상
- III. 조선 왕실 설빙의 기능과 의미
- IV. 맺음말

조선시대 국왕 국장^{國葬}의 설빙의례^{設氷儀禮}

이정민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1. 머리말

사람이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통과하게 되는 상장^{喪葬} 의례는 다른 의례들과 달리 고인이 직접 의례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의례를 주관하는 것이 특징이다.¹ 특히 국장^{國葬}은 국왕이나 왕실의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장례 절차로 조선 왕실이 죽음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중 설빙^{設氷}[혹은 설빙례^{設氷禮}]은 승하한 국왕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을 설치하는 의식이다. 습의^{襲衣} 및 소렴^{小殮}을 마친 시신은 사후 5일째에 대렴^{大殮}을 하고 재궁^{梓宮}에 넣어 칠을 한다. 그런데 국왕이 여름철에 승하하거나 온돌의 온도가 높으면 시신이 빠르게 부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시신 주변에 얼음을 두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대학^{大學}』과 『시경^{時經}』의 기록을 보면 얼음을 떠내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의 높은 신분에서만 가능하였으며 부패 방지 시설 또한 마찬가지였다.² 국가를 상징하는 국왕의 국장에서는 그 신분에 걸맞게 초상^{初喪}에서 대렴까지 매일 얼음을 제공하여 쓰게 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얼음을 넣는 상자를 빙반^{氷盤}이라고 하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평상을 잔상^{椁床}[혹은 전평상^{箭平床}]이라고 하며, 쌓아둔 얼음이 상 안으로 떨어지지 않게 네 모서리에 설치한 기물을 잔방^{椁防}[혹은 전방^{箭防}]이라고 한다.

1 일제강점기 일본식 화장과 장의업이 성행하고 학문적 개념 정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葬禮)'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장례가 상례(喪禮)를 대체하는 용어로 일반화되기도 하였지만, 본 글에서 장례는 '상례 중 시신을 처리하여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장사(葬事) 절차'까지로 의미를 좁혀 사용한다. 상례는 시신의 처리 과정과 집안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제사 의례 및 삼년상 전체를 포괄하는 반면 장례는 고인의 사망부터 시신을 염습하여 매장·화장하고 삼우제를 지내는 절차까지로 한정된다. 김시덕, 「현대 한국 상례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40(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pp. 215~239 참조.

2 『世宗實錄』 卷70, 世宗 17年 11月 17日 甲申.

국장의 절차에서 설빙이 지나는 일차적인 목표는 국왕 시신의 부패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빙반은 1720년(경종 즉위년) 이후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얼음을 담은 그릇을 잔상의 네 귀퉁이에 놓았다고 한다.³ 이를 통해 빙반을 사용하여 며칠간 얼음을 쓰는 것이 시신의 부패 방지에 큰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영조 대에 폐단을 이유로 설빙의 기물을 간략히 하라는 하교가 내려진 사실은 설빙이 지닌 부패 방지 시설로서의 기능에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의 국왕들은 설빙의 절차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 방식을 간소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는 설빙이 지나는 상징성, 즉 사망한 국왕의 육신을 보존한다는 ‘예禮’의 정신만큼은 끝까지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시설’이 아닌 ‘국왕을 애도하는 유교적 의례’로써 설빙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또 다른 상징성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왕실 국장의 설빙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으며, 그것이 보여주는 조선 왕실의 경험과 죽음관은 무엇인지 고찰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조선시대 국장의 운영과 설빙

1. 흥례凶禮의 정비와 「설빙」

국훈國恤에 관한 법칙을 제정하지 않았던 고려와 달리,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 의례를 정비하면서 중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왕실의 흥례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국왕과 왕후의 장례는 ‘나라의 장례’라는 의미에서 ‘국장’으로 불렸는데, 그 절차와 내용은 국가 전례서 및 흥례 관련 의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⁵

조선의 전례는 1451년(문종 1) 편찬된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를 통해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흥례의 순서로 된 오례五禮 체제를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1474년(성종 5)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되었다. 『국조오례의』는 대표적인 국가 전례서로써 그 지위를 유지했으나 양란을 겪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내용상의 수정이나 새로운 제도들의 필요성이 대두되

3 『國朝喪禮補編』卷4, 受教分類(上) 「設氷」, “전교하기를, “예문(禮文)에 ‘빙반(氷槃)’, ‘잔상(棧牀)’, ‘상잔방(棧防)’이 있는데, 경자년(1720, 경종 즉위년) 이후로는 이를 배설하지 않고 단지 그릇에 얼음을 담아 네 귀퉁이에 놓으니, 이 또한 폐단을 줄이려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제 그를 준수하라. 얼음을 담은 그릇은 자내(自內)에 있으니, 만들어 들일 필요는 없다.”

4 『高麗史』卷64, 禮6, 「凶禮」, 「國恤」 「序」, “고려 사람들은 국훈 의례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나라에 대고(大故)가 생기면 그 때마다 임시로 널리 <옛 전적에서 참고할 것을> 뽑아내어 비교하고 사례를 따라 치렀는데, 일이 끝나면 기피하여 <기록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사적에 보이는 것은 특별한 개략일 뿐이다.”

5 조선 국왕의 국장에 관한 사례 연구로는 이현진,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태동고전연구』 27(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b);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글항아리, 2015) 참조.

었다. 특히 상장례는 매우 복잡하고 변례變例가 많아 여러 논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744년(영조 20)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가 편찬되었고, 이것을 보완하고자 1751년(영조 27)에 편찬되고 간행되었던 것이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와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국가 전례서에서 흥례의 내용은 국왕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다른 왕실 구성원의 상장례를 위한 별도의 국가 전례서를 편찬할 것을 명했고, 1751년 효순왕후孝純王后, 1715~1751의 상과 1752년(영조 28)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의 상을 결정적인 계기로 1752년 5권 4책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하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되었다.⁶ 그리고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번잡함을 줄이기 위해 1758년(영조 34) 6권 6책의 『국조상례보편』(이하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되면서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가 최종적으로 정비되었다.

이상의 국가 전례서에 수록된 국장 절차의 조목들을 살펴보면 『세종실록오례』 「흥례」에 수록된 각 조목이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⁷ 그 가운데 계빈啓殯까지의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먼저 고명顧命부터 성복成服까지의 절차는 「[국휼]고명[國恤]顧命」, 「초종初終」, 「복服」, 「역복불식易服不食」, 「계령戒令」,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곡爲位哭」, 「거림擧臨」, 「함습」, 「설빙」, 「영좌靈座」, 「명정銘旌」, 「고사묘告社廟」, 「소렴小斂」, 「전」, 「치벽治柩」, 「대렴大斂」, 「전」, 「성빈成殯」, 「전」, 「여차廬次」, 「전」, 「성복成服」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성복 이후부터 계빈까지의 절차와 조목은 『국조오례의』 이후로 특정 조목이 추가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⁹ 「[국휼]복제[國恤]服制」, 「사위嗣位」, 「반교서頒教書」, 「고부청시청승습告訃請諡請承襲」, 「조석곡전급상식[의]朝夕哭奠及上食[儀]」, 「삭망전朔望奠」, 「의정부솔백관진향의議政府率百官進香儀」, 「치장治葬」, 「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 「계빈[의]啓殯[儀]」의 내용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설빙」은 대렴 전까지 승하한 국왕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을 설치하는 의례이다. 국왕의 시신은 목욕과 습을 마친 후, 승하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소렴을 거행하고 5일째 되는 날에 대렴을 거행했다. 대렴을 마친 시신은 재궁에 넣고 칠을 하는데, 국왕이 여름철에 승하하거나 온돌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시신이 빠르게 부패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승하한 국왕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얼음을 놓는 설비를 마련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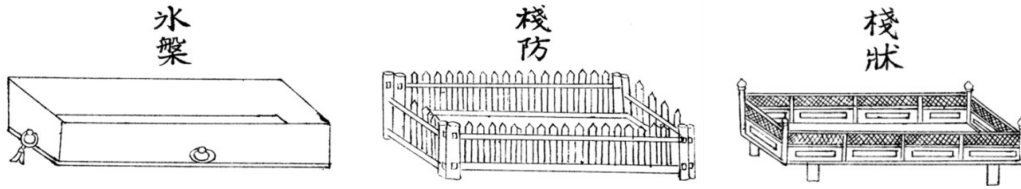
6 이현진, 『조선 왕실의 상장례』(신구문화사, 2017), pp. 47~51.

7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 절차와 『국조상례보편』」, 『朝鮮時代史學報』 51(조선시대사학회, 2009), pp. 202~204 참조.

8 본 글에서 논의하는 설빙은 발인 전까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의례이므로 출관(出棺) 이후의 조목들은 생략했다. 조선시대 국장 의례 절차 전반에 관한 연구는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가 있다.

9 구체적인 비교 내용은 이현진, 「영조대 왕실 상장례(喪葬禮)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한국사상사학』 37(한국사상사학회, 2011a), pp. 148~151 <부표> 참조.

국장의 설빙을 위한 기물은 공조工曹에서 선공감繼工監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였는데, 시신의 신장이나 무게에 따라 그때의 사정에 맞게 제작하였다.¹⁰ 해당 설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1. <빙반氷盤-잔상棧狀-잔방棧枋의 도설>, 『춘관통고春官通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유물번호: K2-2143

먼저 빙반은 얼음을 담기 위한 용기로, 영조척營造尺으로 길이 10자, 너비 5자 6치, 깊이 3자이다. 바깥쪽 사면四面에는 큰 쇠고리鐵環를 박아 베를 꿰어 들기 편하게 했다. 다음으로 잔상은 빙반 내부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한 평상의 일종이다. 길이 8자, 너비 3자 6치, 높이 5치에 1자 높이의 난간을 둘렀으며, 시신에 습기가 바로 닿지 않도록 대나무 그물竹網을 짜서 붙였다. 마지막으로 잔방은 빙반 내부에 잔상을 두고 얼음을 채울 때 쌓아둔 얼음이 평상 안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한 번 더 둘러서 설치한 3자 높이의 난간으로 네 모서리에 쇠 갈고리鐵鉤를 달아 잔상과 연결連接하는 곳을 걸어 잠글 수 있게 하였다.¹¹

이러한 3중 구조를 통해 설빙을 시행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빙반 내부에 잔상을 두고 그 아래의 공간에 얼음을 채운다. 다음으로 국왕의 시신을 잔상 위로 옮기고 잔상의 사면에 잔방을 설치한다. 잔상과 잔방이 연결하는 곳에는 쇠 갈고리를 걸고 당겨서 튼튼하게 고정한다. 그리고 빙반 내부의 남은 공간에 얼음을 둘러서 쌓는다. 이때 쌓아둔 얼음이 잔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빙에 사용하는 얼음은 내빙고內水庫에서 진배하며, 중춘仲春, 음력 2월 이후부터 그 절후節候를 헤아려서 습기를 입히고 소렴을 하고 난 후에 사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절후가 심하게 덥지 않으면 전목반全木槃에 얼음을 담아 때에 따라 평상 아래와 사면에 두는 것도 허용했다. 이때 습기를 빨아들여 얼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토롱土壘이나 고만초菴蔓草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¹²

10 『世宗實錄五禮』 卷134, 凶禮儀式「設水」.

11 『國朝喪禮補編』 卷1, 「設水」.

12 『國朝喪禮補編』 卷1, 「設水」.

2. 국왕 국장에서의 설빙 시행 양상

『대학』과 『시경』의 기록을 보면 얼음을 쓰는 행위는 경대부 이상의 높은 신분에서나 가능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경우, 세종 연간의 기록에 따르면 종친과 대신·공신의 예장禮葬까지 모두 빙반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이들은 초상에서 대렴까지 날마다 얼음 20정^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더위가 극심하지 않은 5월 보름 이전과 8월 보름 이후에는 그 양을 반으로 감하도록 했다. 또한 예장도감에서 이들을 검찰하여 빙반까지 내려주도록 했다.¹⁴ 이러한 규제는 추후 2품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5월 보름 이후부터 8월 보름 이전에 초상에서 대렴까지 얼음을 쓸 수 있었다. 이때 정2품은 매일 15정을 지급받고 종2품은 매일 10정을 지급받았다.¹⁵

국왕 국장에서 설빙은 국왕이 승하한 이후부터 시신을 대렴하는 5일까지 매일 내빙고에서 얼음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다만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되는 만큼 다른 의례에 비해 유동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왕이 겨울철에 승하하는 등 그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다면 설빙을 굳이 거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순조純祖, 재위 1800~1834와 철종哲宗, 재위 1849~1863의 국장이 있다. 이들은 각각 12월·1월에 승하하였기 때문에 설빙을 거행할 이유가 없었고, 이에 따라 순조와 철종의 국장 의례에는 설빙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다.¹⁶

반면 날이 지나치게 덥거나 시신의 부패가 유달리 가속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가 최종적으로 정비된 『국조상례보편』에 따르면 설빙은 습의를 입히거나 소렴을 행한 이후에 거행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영조의 국장과정을 살펴보면 습의를 입히기 전에 설빙부터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그 이유는 방의 온돌이 너무 뜨거운데 습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상주였던 왕세손은 이를 곧바로 허

13 『世宗實錄』卷70, 世宗 17年 11月 17日 甲申,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대학(大學)』에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얼음을 떠내는 집은 소와 양(羊)을 기르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주(註)에, ‘얼음을 떠내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의 초상과 제사에 얼음을 쓰는 사람을 이른 것이라.’ 했습니다. 또 『시경(詩經)』 칠월편(七月篇)의 주에는, ‘4월에 양기(陽氣)가 다 발달되므로 얼음을 이에 크게 내어, 식육(食肉)의 녹(祿)과 늙고 병든 사람과 초상과 목욕에 얼음이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다.’ 고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경대부의 초상에 얼음을 쓴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또 본국(本國)의 종친과 대신·공신의 예장에도 4월부터 9월까지의 모든 빙반을 사용하여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유사(有司)가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으니 옛날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옛날의 제도와 본국의 정한 제도에 의거하여 종친과 대신·공신의 예장에는 빙반을 사용하되, 초상에서 대렴까지는 날마다 얼음을 20정(丁)을 사용하고, 5월 보름 전과 8월 보름 후에는 반을 감하게 하고, 예장도감(禮葬都監)에서 검찰하여 아울러 빙반까지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 『世宗實錄』卷70, 世宗 17年 11月 17日 甲申.

15 『世宗實錄』卷86, 世宗 21年 7月 26日 壬申,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明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傳)한 교지(教旨)를 받들며, ‘종친(宗親)과 대신(大臣)의 예장 때에 빙반을 쓰는 것은 이미 입법(立法)하였으나, 정2품·종2품에 빙반을 쓰는 법은 입법(立法)하지 않았으니, 마감(磨勘)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지난 을묘년에 수교(受教)한 것을 자세히 상고하여 보니, ‘종친·대신·공신의 예장에 빙반을 쓰되, 초상(初喪)에서 대렴까지 매일 얼음 20정(丁)을 쓰고, 5월 보름 이전과 8월 보름 이후에는 반으로 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정2품·종2품에게 5월 보름 이후 8월 보름 이전에 초상에서 대렴까지 역시 얼음을 쓰게 하여, 정2품은 매일 15정을 주고, 종2품은 매일 10정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6 안희재, 『19세기 朝鮮 國王國葬에 관한 연구 - 純祖·憲宗 哲宗國葬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37(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pp. 398~402.

17 『承政院日記』英祖 52年 3月 5日 丙子, “承旨奉令旨書出, 尙詰進前奏曰, 設氷之禮, 載於禮記, 顧今房埃過溫, 襲時尚遠, 設以平床, 亦即設氷, 何如? 令曰, 依.”

락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설빙례의 시행은 엄격한 절차와 법식을 따랐다가보다 국왕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때의 상황에 맞게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1752년에 6월에 내려진 영조의 하교이다. 영조는 1720년 이후로 빙반·잔상·잔방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얼음을 담은 그릇을 평상의 네 귀퉁이에 놓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¹⁸ 해당 내용은 『국조상례보편』의 「수교분류受教分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⁹ 이처럼 기왕의 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얼음을 사용하는 것은 빙반·잔상·잔방을 통한 설빙의 기능성은 최소화하고, 국왕의 시신을 보존시킨다는 상징성만을 살리고자 했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각종 전례서에 빙반을 이용하는 것이 수록되어 있고, 잔상·잔방 또한 많은 사력事力을 필요로 하는 기물이 아니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설빙의 시행 방식은 20여 일 만에 이전의 방식으로 복구되었다.²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설빙의 시행은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그 기능성과는 큰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조는 지나친 기물의 사용을 지적하면서도 설빙에 들어가는 얼음의 양이나 그것을 끊임없이 수급하기 위한 노동력은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설빙의 시행 방식을 기존의 방식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사용된 논리 역시 빙반의 기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기물을 조성하는 것에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과연 국장에서의 설빙은 국왕 시신의 부패 속도를 늦춘다는 본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일까?

Ⅲ. 조선 왕실 설빙의 기능과 의미

조선의 각종 의례 체계는 『주자가례朱子家禮』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각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조선만의 문화를 만들어나갔다. 이는 상장 의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조선은 『주자가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선만의 유교식 상례 절차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물로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 『가례집람家禮輯覽』 등이 있다.²¹

설빙의 경우 『주자가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상례비요』와 『가례집람』 등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절차가 당시 조선 사회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결과

18 『承政院日記』英祖 28年 6月 12日 辛丑.

19 『國朝喪禮補編』卷4, 受教分類(上)「設冰」.

20 『承政院日記』英祖 28年 7月 2日 辛酉, “設冰, 只用盛器, 而棧牀防諸具, 雖有減省之教, 大槩造冰, 既載儀禮, 且棧牀諸具, 既非多費事力者, 依前仍置, 以臨時稟用, 懸註, 何如?”…(중략)… “上曰, 並依爲之.”

21 김시덕, 『한국의 상례문화』(민속원, 2012), pp. 113~121 참고.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빙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만의 방식으로 망자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례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설빙에서는 조선 사회의 경험과 죽음관이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것일까?

장례에 얼음을 사용한다는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신의 보존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했으며 시신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지연시켜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전하는 몇 안 되는 기록들도 설빙의 효과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설빙을 위한 기물이 지니는 사치성이나 각 품계에 따른 얼음 사용량을 규정하는 등 기능성이 아닌 '예'에 중점을 두고 설빙을 언급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국왕에 대한 국장의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그리고 이처럼 복잡한 절차는 죽은 자를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효의 지극한 마음이 전제된다. 따라서 설빙이라는 절차를 통해 얼음까지 두어가며, 대령 전까지 국왕의 시신을 묶거나 관에 넣지 않고 바깥에 두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표현으로 국왕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신의 영혼과 육체를 여전히 산 사람처럼 여기는 것을 '불사기친不死其親'의 관념이라고 한다.²² 식사 때가 되면 생시와 같이 상식上食을 올리는 행위 역시 이러한 관념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르면 국왕의 시신을 보존하는 행위는 국왕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론적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국장의 절차에서 설빙은 승하한 국왕에 대한 사왕廟王이나 왕실 구성원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권력과 신분이 상위로 갈수록 가파른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빙의 시행 방식에도 엄격한 수직적 위계와 신분 질서가 반영되어 있었다. 바로 각 품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얼음의 양을 제한해둔 것이다.²³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빙반을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세종 대의 기사를 통해 종친과 대신·공신의 예장에 빙반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예장도감에서 이를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⁴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왕 국장의 설빙에 사용된 기물에는 빙반뿐만 아니라 잔상과 잔방도 있었다. 그렇다면 빙반만 지급받은 이들의 설빙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빙반 위에 평소 사용하던 침상을 놓은 뒤, 침상의 자리를 치우고 대나무 발을 한 겹으로 깔아 시신을 옮겨두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는 시신을 씻긴 후에 설빙을 행해야 하지만 얼음이 귀했던 만큼 이를 구하는 즉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²⁵

22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37(역사실학회, 2010), p. 43.

23 『世宗實錄』卷86, 世宗 21年 7月 26日 壬申.

24 『世宗實錄』卷70, 世宗 17年 11月 17日 甲申.

25 김시덕, 앞의 책(2012), p. 383.

한편 국왕 국장에 사용했던 침상, 즉 잔상은 오직 국왕의 장례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그 까닭에 국장의 설빙을 위한 잔상은 국왕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잔상과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 한 면이 중간 정도 열려있었던 평시의 잔상과 달리 사면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²⁶ 시신은 입출입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빙은 국왕부터 2품까지 두루 행하는 의례였지만 빙반·잔상·잔방으로 이루어진 3중 구조를 이용하여 얼음을 사용하는 것, 승하한 국왕의 체격에 맞춰 기물을 새로 조성하는 것, 그리고 얼음을 받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시기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설빙이 보여주는 신분과 권력의 차등성이었다.

이처럼 국장에서 시행하는 설빙의 본원적인 목적은 승하한 국왕의 시신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데에 있지만, 설빙의 의미와 기능은 단순히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 왕실의 국장 절차로써 설빙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유교식 상례가 조선의 문화와 융화하면서 보편화되고 정착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그것이 유교식 상례 제도로써 지니는 의미는 조선 왕실의 죽음관, 즉 장례 절차를 통해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내보이는 방식이나 왕실 구성원들의 의식 세계를 살펴보는 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IV. 맺음말

조선 사회는 유교 국가였고 유교문화권에서는 모든 질서를 ‘예’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분지었다. 이는 특히 상장 의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죽음은 신분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애도하는 방식에는 신분에 따른 권력과 위계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장례 절차는 승하한 국왕이 직접 의례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왕과 같은 주변 인물들이 의례를 주관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것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국가의 존엄성과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 조선에서 국왕의 국장은 오례 가운데 흥례의 하나로 치러졌으며, 그 내용은 『세종실록오례』에서 기초가 마련되어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통해 완비되었다.

본 글에서 살펴본 「설빙」은 『주자가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상례비요』와 『가례집람』 등에서 등장하고 있는 절차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을 설치하는 의식이다. 조선의 장례 절차는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다는 관념 아래에서 행해졌는데, 이같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얼음을 지급하는 장례 절차는 조선 사회가 시신의 보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식 장례 절차를 준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시신을 화장하거나 풍장할 경우에는 시

26 장경희, 『국장과 왕릉』(현암사, 2022), p. 117.

신의 부패를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설빙은 다른 절차들에 비해 그 시행 방식이나 절차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국왕이 겨울철에 승하하는 등 시신의 부패가 가속시키는 요인이 없다면 생략하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이 촉박해지면 국가 전례서에 기술된 것보다 일찍이 시행하기도 하였다.

설빙을 위한 기물은 공조에서 선공감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였다. 얼음을 담은 빙반, 시신을 두는 잔상, 쌓아둔 얼음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는 잔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하는 얼음은 내빙고를 통해 수급받았다. 1720년 이후로 빙반·잔상·잔방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얼음을 담은 그릇을 평상의 네 귀퉁이에 놓았다고도 하지만, 영조 대의 기록을 보면 다시 이전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장에서의 설빙은 국왕 시신의 부패 속도를 늦춘다는 본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었을까?

국장에서의 설빙이 시신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지연시켜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전하는 기록들은 설빙의 기능성보다는 사치성 혹은 각 품계에 따른 차등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설빙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신분에 걸맞게 망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례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국왕에 대한 국장의 절차는 조선 사회의 그 어떤 구성원의 것보다도 까다로웠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는 죽은 자를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효의 지극한 마음이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빙이라는 절차는 국왕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국가적 의례를 통해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설빙을 통해 국왕의 시신을 보존하는 행위는 국왕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론적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설빙은 국왕부터 2품까지 두루 행한 의례였지만 빙반·잔상·잔방으로 이루어진 3종의 구조를 이용하여 얼음을 사용하는 것과 승하한 국왕의 체격에 맞춰 기물을 새로 조성하는 것, 그리고 얼음을 받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시기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이처럼 국장 의례에서 확인되는 설빙의 시행은 시신을 보존한다는 일차적인 목적을 넘어 치밀한 상징적 체계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가 교류하고 혼백魂魄에 대한 의리를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빙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오늘날의 영안실에 비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조선 사회에서의 장례, 특히 국왕을 포함한 왕실 구성원의 장례 절차에는 실효성이나 기능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징과 코드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

『世宗實錄』

『世宗實錄五禮』

『國朝喪禮補編』

『承政院日記』

『春官通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유물번호: K2-2143

[저서 및 논문]

김시덕, 「현대 한국 상례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40,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_____, 『한국의 상례문화』, 민속원, 2012.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 절차와 『국조상례보편』」, 『朝鮮時代史學報』 51, 조선시대사학회, 2009.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19세기 朝鮮 國王國葬에 관한 연구 - 純祖·憲宗·哲宗國葬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이현진, 「영조대 왕실 상장례(喪葬禮)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한국사상사학』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a.

_____,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태동고전연구』 2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b.

_____,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_____, 『조선 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37, 역사실학회, 2010.

장경희, 『국장과 왕릉』, 현암사, 2022.

조선시대 국왕 국장國葬의 설빙의례設水儀禮

주제어

국장 | 설빙 | 국왕 | 조선 | 왕실 | 상례

조선 왕조의 국장國葬은 국왕의 사후 치러지는 국가적인 장례 절차로 조선 왕실이 죽음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중 설빙設水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상례비요喪禮備要』와 『가례집람家禮輯覽』 등에서 등장하고 있는 절차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을 설치하는 의식이다. 승하한 국왕의 시신은 사후 5일째에 대렴大殮을 하고 재궁梓宮에 넣어 칠을 하는데 국왕이 여름철에 승하하거나 온도의 온도가 높으면 시신이 빠르게 부패할 수 있어 시신 주변에 얼음을 두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국왕의 국장에서는 설빙을 위해 세 가지 기물이 사용되었다. 먼저 설빙에 사용되는 얼음을 넣는 상자를 빙반氷盤이라고 하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평상을 잔상棧牀[혹은 전평상箭平床]이라고 하며, 쌓아둔 얼음이 상 안으로 떨어지지 않게 네 모서리에 설치한 기물을 잔방箭防[혹은 전방箭防]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기물들은 1720년(경종 즉위년) 이후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얼음을 담은 그릇을 잔상의 네 귀퉁이에 놓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빙반을 사용하여 며칠간 얼음을 쓰는 것이 시신의 부패 방지에 큰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빙에서는 시신 부패 방지 시설 외에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조선 사회의 경험과 죽음관을 결부시켜 재고해볼 수 있다. 조선 국왕에 대한 국장의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는데, 이같이 복잡한 절차는 국왕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효의 지극한 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설빙이라는 절차를 통해 얼음까지 두어가며 대렴 전까지 국왕의 시신을 바깥에 두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자 국왕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설빙에는 조선 사회의 엄격한 수직적 위계와 신분 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각 품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얼음의 양을 제한해둔 것이 대표적이며, 세 가지 기물을 모두 갖추어 가며 얼음을 사용한 것은 국왕의 국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권이자 신분의 차등성이었다. 요컨대 설빙이 단순한 시신 부패 방지 시설을 넘어 유교식 상례 제도로써 지니는 의미는 조선 왕실의 죽음관, 즉 장례 절차를 통해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내보이는 방식과 그들의 의식 세계를 살펴보는 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준다.